

참 고 1

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48조의4(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(이하 “외국법인세액”이라 한다)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<u>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</u>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8조의4(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 <u>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명세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(이하 “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”이라 한다)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<u>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명세서</u>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</u></p>